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2019. 3.

한국관광대학교 성고충상담실

- 목 차 -

- I. 목적 및 대응 절차
- 1. 목 적
-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II.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 1. 성고충상담실
 - 1) 상담
 - 2) 사건 조사
 - 3) 보고
 - 4) 사건 처리
- 2. 피해자 소속 학과
 - 1) 사건인지 단계
 - 2) 피해자와 상담단계
 - 3) 행위자 면담단계
 - 4) 성고충상담실과의 협의 및 인계 단계
 - 5) 사건 종료 이후 단계
- 3. 피해자
 - 1)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단계
 - 2) 학내 절차를 통한 해결
 - 3)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 4) 그 밖의 유의사항
- 4. 행위자
- 5. 제3자
- 6.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여러 가지 경우
- Ⅲ.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 참고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매뉴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사건처리 가이드

성희롱 · 성폭력 사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I. 목적 및 대응 절차

1. 목 적

- 한국관광대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구성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일 경우, 신속한 개입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으로 구성원의 인권과 학습권/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함.
- 학내규정 : 한국관광대학교 성 관련 위법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 성고충상담실

상담단계	 상담신청인의 입장 요구 사항 파악 별도의 공간 확보 및 충분한 정보제공 피해자 신원 및 상담내용 비밀 보장 신고 결정 후 서면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접수
조사단계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조사 당사자 진술서 및 증거자료 보관 20일 이내 조사완료/ (10일 이내 연장가능) 조사 절차 및 상황 안내
고충 심의 위원회 처리 단계	· 회의 진행 시, 자료 및 기록관리 철저 ·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중요
사건 종결 단계	 합의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 장계결정 시 이행 사항 확인 필요 후속조치 실행 당사자에게 최종결과 통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홍원 2018년 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 업무매뉴얼 참고-

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주체별 대응 매뉴얼

1. 성고충상담실

1) 상담

- 접수 상담에는 구체적 호소내용을 듣고, 신고가능여부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색 한 후, 다양한 해결방안의 장단점을 검토.
- 상담, 신고접수, 사건 조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상세한 안내.
- 학생지원센터장과 관련 학과(부)의 학과(부)장을 포함하여 대책위원회 운영 안내.
- 학교 규정, 관련 법령 및 기관에 대한 안내.
-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의 사를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방법을 문서화 해 놓음.

2) 사건 조사

- 사건 신고서에 의한 서면 신고를 원칙으로 함. 신고서에는 인적사항이나 사건의 내용 등 사건처리에 필요한 항목들이 포함됨.
-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신고접수에 대한 피해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 후 접수.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면담을 실시함.
- 진술서 내용은 사건의 발생상황과 일시, 장소, 관련자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 하고, 사건으로 인한 생각, 영향, 요구사항을 기술.
- 진술서에는 제출인의 신원과 서명, 작성일시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
- 진술조서에 기반 하여 조사 면담 진행.

3) 보고

- 신고인, 피신고인, 관련인 등의 진술서와 출석진술의 내용 및 제출된 참고자료들을 근거 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합리적인 사람의 관점에 근거한 조사 보고서 작성.
- 보고서 내용에(조사위원들에 의해 합의가 된) 행위자(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징계 요청 포함.

4) 사건 처리

- 조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신고인, 피신고인에게 고지.
-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사건 당사자는 총장에게 재심의 요청.
- 센터 접수 사건 조사보고서에 요청한 조치 및 징계 절차 모니터링.

2. 피해자 소속 학과

1) 사건인지 단계

-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성고충상담실'에 보고.(학생지원센터 보고, 사건 비밀보장)
- 상담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최우선 함.
- 피해자에게 학교생활에 어려운 점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달.
-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는 즉시 피해자와 행위자의 접촉 가능성을 파악 후,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를 강구.(피해자와 행위자가 같은 학과/학부 소속 학생일 경우)

2) 피해자와 상담 단계

- 성고충상담실로 인계 전 피해자와 상담을 하게 될 경우,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행위자에 대하여 대응하려 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며, 학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전달.
- 상담과정에서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함.
-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과/학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 가능한 것들을 실시.(피해자 요구 반영)

3) 행위자 면담단계(행위자가 피해자와 같은 학과일 경우)

- 행위자를 면담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판단, 결정, 화해가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추가적인 피해자의 존재 여부 확인 등의 차원에서 즉각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
- 행위자를 면담할 때는 공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도록 하고,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해자로 단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유의. 행위자를 비난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행위자에게 "해당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소문 유포 및 비난, 위협, 원치 않는 만남 강요 등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고지해야 함.

4) 성고충상담실과의 협의 및 인계 단계

- 피해자 상담을 거쳐 성고충상담소로 신고 및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진행상황을 주시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상황을 살핌.
- 성고충상담실로 부터 진술 요청이 들어오면, 피해자 및 행위자와의 상담 등으로 파악 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하며 처리 절차에 적극 협조.
- 학과/학부 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소문이 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소문 유포자에 대하여 2차 가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

5) 사건 종료 이후 단계

- 성희롱 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재발되거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 피해자

1) 성폭력 발생 단계

- 성폭력은 전적으로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란 것을 인식.
- 성폭력은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근절해야 하는 문제임을 확신.
- 사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록하고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전화 통화내역, 목격자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

2) 학내 절차를 통한 해결

- 학내 성폭력 상담 기구인 '성고충상담실'에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피해자 본인이 원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상담.

3)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 성폭력 피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고소진행과 별도로 '성고충상담실'에서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음.

4) 그 밖의 유의 사항

- 피해자가 행위자의 언행을 인터넷에(행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도록)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

4. 행위자

- 행위자가 성희롱·성폭력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는 성희롱·성폭력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유념.
- 성희롱·성폭력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즉시 사과.

5. 제3자

- 개인적으로 궁금한 상항을 캐 묻거나 더 자세하게 말하라고 채근하지 말아야 함. 피해 자 스스로 사건의 노출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배려.
- 피해자의 당시 대처와 행동에 대한 판단과 충고는 하지 않으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것 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줌.
- 피해자의 자책감을 부추길 수 있는 '왜 그랬냐?'는 식의 말을 자제하고 피해자의 이 야기를 믿고 들어주며 정서적으로 지지.
- 학내 절차에 따르기 위해 신고할지 여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함.

6. 성폭력 · 성희롱 상담의 여러 가지 경우

■ 성희롱·성폭력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

교내·외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법적·의료적·심리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함께 찾고, 필요한 경우 병원, 경찰, 법률 기관 등과 연계하여 피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데이트 성폭력 등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요구로 어려운 경우

데이트 관계나 아는 관계 등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요구가 있는 경우에 상담을 통해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솔직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 받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후유증으로 어려운 경우

성폭력 피해 이후 적절한 심리적·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여 현재의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심리 상담을 통하여 후유증으로부터 회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밖에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밖에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등 다양한 성적 피해 상황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함께 의논 할 수 있습니다.

Ⅲ.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

1.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 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 데이트성폭력, 교사·동료 등에 의한 성폭력이 그 예입니다.

■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에 일어난다?

성폭력이 성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우발적이어야 하나, 대부분의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이 성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 성폭력은 20대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폭력 피해는 유아에서 노년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으며, 남성피해인 경우도 전체 피해의 5~10%정도가 되며, 19세 이하의 피해자가 50%를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은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군대내 성폭력처럼 남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문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출이 심한 여름에 성폭력이 더 많이 발생해야 하지만, 실제로 계절과 상관없이 성폭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 유 발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이상자다?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여성에 대한 비하의식과 잘못된 성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등을 사회적인 약자에게 표출합니다.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실제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아닙니다. 성을 매개로 한 괴롭힘은 모두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단지 친밀감의 표현일 따름이다?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느낌과 영향이 판단기준입니다.

2. 사이버 성폭력이란?

■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정서적 피해를 유발시키는 행위로 사이버성폭력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없이 글, 음향,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인 모욕감이나 두려움, 위협감 등 정서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특히 몰래카메라 등 음란 동영상 유포는 그 파급효과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3. 스토킹(Stalking)

■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해당됩니다.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로보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4.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상대방을 당신과 똑같은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성들과의 교제를 통해 이성들이 남녀관계에서 무엇을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 이해하 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은 성적 언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특히 성차별적인 농담을 하거나 이성을 비하하는 언동을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성경험을 공공연히 이야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 상대방의 '아니오.'는 분명한 거부 의사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성적인 언동에 대해 적극 응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얌전히 있거나, 별 저항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동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물어보고 분명한 대답을 들어야합니다.

5.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 평소 자신의 성행동에 관한 지침을 정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한 지침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나 상황에 따라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누구도 당신에게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 혹은 요구가 있으면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항의합니다.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하고,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불편하면 상대방에게 항의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상대방은 침묵이나 무시, 약한거부 등을 동의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6. 성적 접촉에 대한 갈등 해결하기

■ 상대방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자.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 대한 감정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 지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결혼 전의 성적 접촉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점검하자.

인간에게 '성'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 나는 평소에 결혼 전의 성적인 접촉에 대해 어떤 생각을 지녀왔는지 ? 지금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성적 접촉은 어떤 의미인지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결혼 전의 성적 접촉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과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자

만일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 극단적인 경우 임신하거나 성병에 감염된다면 ? 혹시 서로의 감정이 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헤어지게 된다면 ? 나와 결혼한 사람이 혼전의 성적 접촉을 문제 삼게 된다면 ?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상대방과 이야기해 봅니다.

■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상대방과 공유하자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것을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 하십시오

■ 그래도 성적 접촉의 갈등이 남는다면 !!

두 사람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합시다 대화를 통해서도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혹시 서로에 대한 이해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 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갈등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담 전문가를 같이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 성폭력 발생과 대응방법

■ 피해자

-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은 버리고, 내가 느꼈던 공포의 무력감을 인정하고, 나의 분노를 인정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또는 좋 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냅니다.

■ 가해자에게 대응하기

- 먼저 자신의 느낌을 믿고 인정합니다.
- 자신의 의사를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 가해자가 한 행동을 가해자 및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이야기 합니다.
- 가해자가 자신이 한 행동을 책임지게 합니다.
- 직접적으로 정확하고 당당하게 나의 의견을 주장합니다.
-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대응방법-강간

-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몸을 씻지 않은 채로(혹은 씻었더라도) 산부인과에 갑니다.
- 가해자의 정액, 음모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성병 감염 여부 검사 및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상황 청취, 기록 및 진료 후의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 피해당시 옷에 묻어 있는 정액이나, 음모, 체액 등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면 범죄신고 112,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신고합니다.
- 사건현장을 보존해 둡니다.
- 몸에 멍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 가해자의 특징, 가해자와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둡니다.
- 구체적인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자신의 대응방법,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 자신을 지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2) 대응방법-스토킹

- 피해자로서 자책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단호히 대처 합니다
- 자신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 합시다
- 단 한번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 합니다
- 학내 '성고층상담소'나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 합니다
- 피해사실에 관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둔다
-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협박, 피해자의 소유물 파괴 등의 증거를 확보해둔다
- 주변사람들(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에게 피해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 합니다
- 접근금지명령 신청 및 고소 여부를 결정 합니다

3) 대응방법-사이버 성폭력

- 개인정보 기입은 신중하게 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관리 합니다
- 상대방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까지 답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 채팅방에서 사적으로 타인을 만날 때 특히 조심 합니다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상대방을 목격하거나 만나면 단호하게 대처 합시다
-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제공자가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능을 익혀둡니다
- 쪽지, 이 메일 수신거부, 화면 캡처 등의 컴퓨터 기술들을 평소에 익혀둡니다
- 신고하거나 법적인 대응을 위하여 증거를 수집, 확보합니다.

※ 참고자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매뉴얼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사건처리 가이드

■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1. 2. 3.

- 1. 자신과 자신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키우기
- 2. 평소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 3. 위기 상황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 미리 알아두기 (경찰신고 112, 여성의 전화 1366, 성고충상담실 031) 644-1041)

■ 성희롱·성폭력 피해 대처 1! 2! 3!

- 1.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기
- 2.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료 확보하기
- 3. 초기에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도움 받기 (경찰신고 112, 여성의 전화 1366, 성고충상담실 031) 644-1041)

■ 한국관광대학교 성고충상담실